

2 0 2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ontents

●	I. 지원신청 안내	5
	1. 공모개요	6
	2. 지원자격	8
●	II. 유형별 세부 안내	11
	1. 전문예술창작지원	12
	2. 신진예술창작지원	18
	3. 예술활동지원	20
●	III. 공통안내	23
	1. 심사 방법 및 절차 안내	24
	2. 교부신청 관련 사항	27
	3. 사업진행	29
	4. 정산서 작성 방법	31
●	IV. 참고사항	35
	1. 예산편성지침	36

2024 아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



지원신청 안내

1. 공모개요
2. 지원자격

1

지원신청 안내

공모개요



공모개요

- 공고기간: 2024년 2월 7일(수) ~ 3월 5일(화)
- 접수기간: 2024년 3월 1일(금) ~ 3월 5일(화) 17시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 신청서식: 아산문화재단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지원사업 게시글 확인
- 문의전화: 041-540-2428 (재)아산문화재단 문화예술팀
- 결과발표: 2023. 3월 중 예정

지원안내

- 지원규모

분야	지원규모	지원금 범위	
예술활동지원	110,000천원	단체	8,000천원 이내
		개인	5,000천원 이내
신진예술지원	40,000천원	단체	5,000천원 이내
		개인	4,000천원 이내
생활예술지원	30,000천원	단체	5,000천원 이내
총 지원액		180,000,000원	

※ 예술단체(인)별 차등 지원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아산시 소재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 지원분야

지원분야	내용
문학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등
공연예술	음악, 전통·국악, 무용, 연극 등
시각예술	순수미술, 서예, 사진, 영상, 조각, 공예 등
다원예술	기존 예술장르에 속하지 않는 복합예술장르

지원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액은 각 유형별 최대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마감 후 수정 및 회수 불가
- 지원사업 제출서류 수신 후, 서류 보완사항 및 접수 결과 개별 연락 없음
- 필수 제출자료 미비시 심의대상에서 제외
- 개인예술인의 사업 중 단체 성격의 사업으로 판단 시 심의에서 제외
- 대표자 또는 개인 예술인의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 후 제출
- 제출 시간 엄수(이메일 수신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

신청 공통안내

- ① 1인(단체) 1개의 사업 지원이 원칙이며 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이 동일한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② 사업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자 단체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사업내용, 참여인력, 주제 등 고려)
- ③ 지원금은 사업계획서에 기재 된 사업 내용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전년도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감액 지원될 수 있습니다.
- ④ 지원신청액은 각 유형별 최대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합니다.
- ⑤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마감 후 수정불가하며, 최종 선정 후 교부신청서는 지원 신청시 작성된 사업 목적 및 기획의도 등 과도한 변경을 불가합니다.
- ⑥ 필수 제출자료 미비시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⑦ 개인예술인의 사업 중 단체 성격의 사업으로 판단 시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 ⑧ 사업 진행 시 타 단체 또는 타 지역의 예술인을 초청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도 실질적 참여 인력으로 판단됨으로 주요참여인력에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 ⑨ 지원신청서 제출 시 대표자 또는 개인 예술인의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 후 제출바랍니다.

2 지원신청 안내 지원자격



지원자격(공통)

- 공고일 전일(2024. 2. 6.) 현재, **아산시 소재의 단체 또는 거주하는 예술인**
- 상업성(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순수 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
- 주요 참여 인력 중 아산시 거주 예술인 8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신청불가대상

- 국립·공립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단체·개인
- 보조금 부정사업자 또는 정산 부적정 통보받은 단체·개인
- 최근 5년 이내 아산시, (재)아산문화재단 보조금 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단체·개인
(실적보고서 미제출,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 미반납)
- 비위 등으로 사법기관 조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개인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단체·개인
- 친목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주 목적이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학교, 학원, 종교기관, 친교기관, 언론사 등에 소속되어 운영하는 단체
- 성희롱·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자 등 관련 규정, 법률 및 지침 위반 행위자
- 최근 3년 이상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개인** ※ **신진예술지원의 경우 제외**

지원신청불가사업

- 최근 3년 이내 **아산문화재단 및 아산시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사업 ※ **예술활동지원 제외**
- 2024년에 아산문화재단 및 아산시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의 사업
- 중앙기관 또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및 시설의 건립, 매입, 재건축사업
- 학술청구(학위 취득 목적) 창작·발표 지원사업

전문예술인 인정범위(아래 중 1개 이상 충족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예술인)
- 아래의 분야별 항목 중 해당 분야 1개 조건 이상 충족하는 예술인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춘문예, 문학지, 문예지 등 등단한 자 • 미등단 작가의 경우 개인 창작집(순수문학지) 출간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 해당분야의 문학상 수상 작가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기획전 및 그룹전 3회 이상 참여한 자 •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자 • 개인전 1회 이상 개최한 자 • 공모전 추천, 초대 작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공연	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3개 작품 이상 주요활동을 한 자 •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자
	연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출가로 1회 이상 활동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공연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학과 졸업하고, 3개 이상 작품에 출연한 자 • 개인발표회(독창회, 독주회 등) 개최 경력이 있는 자 •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자 • 대중음악 분야는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3개 작품 이상 활동을 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학과 졸업하고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3개 이상 주요활동을 한 자 • 개인발표회 개최 경력이 있는 자 •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자 • 해당분야에서 10년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5개 작품 이상 주요활동을 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 아마추어 활동 및 학업 활동 제외



2024 아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세부 안내

1. 전문예술창작지원
2. 신진예술창작지원
3. 예술활동지원

01

전문예술창작지원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전문 예술인의 기획 및 창작활동 지원(미발표신작)

- 문학
- 시각예술
- 공연예술
- 다원예술

01

전문예술창작지원

신청자격

- 공고일(2024. 2. 6.) 이전 아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단체 또는 전문 예술인
 - ※ 대표자 주소지 아산시 필수(주민등록등본제출)
- 전문 예술인 80%이상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 최근 3년간(2021~2023) 관내 총 5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개인
- 전문예술인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예술인

지원내용 및 지원분야

- 문화예술행사에 필요한 인건비, 임차비, 일반운영비, 홍보비, 제작비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지원금: 110,000천원

지원분야	내용	지원규모	
문학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등 창작집 발간 지원, 시낭송회, 문학콘서트 등	단체	8,000천원 이내
공연예술	음악, 전통·국악, 무용, 연극, 뮤지컬, 풍물 등 공연 및 작품 발표		
시각예술	순수미술, 서예, 사진, 영상, 조각, 공예 등 전시 및 작품발표	개인	5,000천원 이내
다원예술	기존 예술장르에 속하지 않는 복합예술장르		

※ 공연의 경우 단체만 가능(독주회, 솔로공연의 경우는 개인 가능)

필수제출서류

구분	지정서식(6종)	증빙자료(3종)
단체	① 지원신청서 ③ 주요참여인력명단 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⑥ 지원신청책임확인서 ② 사업계획서 ④ 단체소개서	① 단체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② 고유번호증 또는 단체설립 증빙자료
개인	① 지원신청서 ③ 주요참여인력명단 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⑥ 지원신청책임확인서 ② 사업계획서 ④ 개인프로필	①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전문예술창작지원 - 문학



지원안내

- 지원대상: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예술단체 또는 전문예술인** ※ 공고일 전일 기준

예술단체	아래 중 1개 이상 충족 □ 전문예술인으로 80% 이상 구성된 단체 □ 그 외 심의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단체 -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 기타 인정여부는 심의 진행 시 결정
전문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지원분야 일치) □ 아래 항목 중 한 개 이상 충족한 작가 - 신춘문예, 문학지, 문예지 등 등단한 자 - 미등단 작가의 경우 개인 창작집(순수문학지) 출간한 자 - 해당분야의 문학상 수상 작가

지원내용

- 문학작품 창작 및 발간, 문학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등
- 인건비, 홍보비, 발간비, 제작비 등

전문예술창작지원 - 시각예술



지원안내

- 지원대상: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예술단체 또는 전문예술인** ※ 공고일 전일 기준

예술단체	아래 중 1개 이상 충족 □ 전문예술인으로 80% 이상 구성된 단체 □ 그 외 심의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단체 -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 기타 인정여부는 심의 진행 시 결정
전문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지원분야 일치) □ 아래 항목 중 한 개 이상 충족한 작가 -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기획전 및 그룹전 3회 이상 참여한 자 -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자 - 개인전 1회 이상 개최한 자 - 공모전 추천, 초대 작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지원내용

- 작품(순수미술, 서예, 사진 등) 창작품 전시 및 작품 발표 경비 지원
- 인건비, 홍보비, 제작비, 재료비 등

전문예술창작지원 - 공연예술



지원안내

- 지원대상: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예술단체 또는 전문예술인** ※ 공고일 전일 기준

예술 단체	아래 중 1개 이상 충족 □ 전문예술인으로 80% 이상 구성된 단체 □ 그 외 심의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단체 -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 기타 인정여부는 심의 진행 시 결정								
전문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지원분야 일치) □ 아래 항목 중 한 개 이상 충족한 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무용</td> <td>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3개 작품 이상 주요활동을 한 자 -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자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연극</td> <td> - 연출가로 1회 이상 활동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음악</td> <td> - 관련학과 졸업하고, 3개 이상 작품에 출연한 자 - 개인발표회(독창회, 독주회 등) 개최 경력이 있는 자 -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자 - 대중음악 분야는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3개 작품 이상 활동을 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전통</td> <td> - 관련학과 졸업하고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3개 이상 주요활동을 한 자 - 개인발표회 개최 경력이 있는 자 -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자 - 해당분야에서 10년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5개 작품 이상 주요활동을 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td> </tr> </table>	무용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3개 작품 이상 주요활동을 한 자 -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자	연극	- 연출가로 1회 이상 활동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음악	- 관련학과 졸업하고, 3개 이상 작품에 출연한 자 - 개인발표회(독창회, 독주회 등) 개최 경력이 있는 자 -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자 - 대중음악 분야는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3개 작품 이상 활동을 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전통	- 관련학과 졸업하고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3개 이상 주요활동을 한 자 - 개인발표회 개최 경력이 있는 자 -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자 - 해당분야에서 10년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5개 작품 이상 주요활동을 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무용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3개 작품 이상 주요활동을 한 자 -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자								
연극	- 연출가로 1회 이상 활동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음악	- 관련학과 졸업하고, 3개 이상 작품에 출연한 자 - 개인발표회(독창회, 독주회 등) 개최 경력이 있는 자 -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자 - 대중음악 분야는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3개 작품 이상 활동을 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전통	- 관련학과 졸업하고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3개 이상 주요활동을 한 자 - 개인발표회 개최 경력이 있는 자 -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자 - 해당분야에서 10년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5개 작품 이상 주요활동을 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지원내용

- 공연을 위한 기획 및 창작 활동의 경비 지원
- 인건비, 무대제작비, 홍보비, 임차비 등

전문예술창작지원 - 다원예술



지원안내

- 지원대상: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예술단체 또는 전문예술인** ※ 공고일 전일 기준

예술 단체	아래 중 1개 이상 충족 □ 전문예술인으로 80% 이상 구성된 단체 □ 그 외 심의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단체 -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 기타 인정여부는 심의 진행 시 결정										
전문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지원분야 일치) □ 아래 항목 중 한 개 이상 충족한 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시각</td> <td> -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기획전 및 그룹전 3회 이상 참여한 자 -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자 - 개인전 1회 이상 개최한 자 - 공모전 추천, 초대 작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무용</td> <td>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3개 작품 이상 주요활동을 한 자 -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자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연극</td> <td> - 연출가로 1회 이상 활동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대중음악</td> <td> - 관련학과 졸업하고, 3개 이상 작품에 출연한 자 - 개인발표회(독창회, 독주회 등) 개최 경력이 있는 자 -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자 - 대중음악 분야는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3개 작품 이상 활동을 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전통</td> <td> - 관련학과 졸업하고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3개 이상 주요활동을 한 자 - 개인발표회 개최 경력이 있는 자 -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자 - 해당분야에서 10년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5개 작품 이상 주요활동을 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td> </tr> </table>	시각	-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기획전 및 그룹전 3회 이상 참여한 자 -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자 - 개인전 1회 이상 개최한 자 - 공모전 추천, 초대 작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무용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3개 작품 이상 주요활동을 한 자 -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자	연극	- 연출가로 1회 이상 활동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대중음악	- 관련학과 졸업하고, 3개 이상 작품에 출연한 자 - 개인발표회(독창회, 독주회 등) 개최 경력이 있는 자 -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자 - 대중음악 분야는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3개 작품 이상 활동을 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전통	- 관련학과 졸업하고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3개 이상 주요활동을 한 자 - 개인발표회 개최 경력이 있는 자 -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자 - 해당분야에서 10년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5개 작품 이상 주요활동을 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시각	-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기획전 및 그룹전 3회 이상 참여한 자 -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자 - 개인전 1회 이상 개최한 자 - 공모전 추천, 초대 작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무용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3개 작품 이상 주요활동을 한 자 -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자										
연극	- 연출가로 1회 이상 활동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대중음악	- 관련학과 졸업하고, 3개 이상 작품에 출연한 자 - 개인발표회(독창회, 독주회 등) 개최 경력이 있는 자 -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자 - 대중음악 분야는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3개 작품 이상 활동을 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전통	- 관련학과 졸업하고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3개 이상 주요활동을 한 자 - 개인발표회 개최 경력이 있는 자 -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자 - 해당분야에서 10년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5개 작품 이상 주요활동을 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지원내용

- 창작 및 기획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인건비, 홍보비, 제작비, 재료비, 임차비, 무대제작비 등

02

신진예술창작지원

충청남도 내 공공지원 실적(보조금지원)이 없는 예술단체·예술인의 기획 및 창작활동 지원

02

신진예술창작지원

신청자격

- 공고일(2024. 2. 6.) 이전 아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단체 또는 전문예술인
 - ※ 대표자 주소지 아산시 필수(주민등록등본제출)
- 전문 예술인 80%이상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 충청남도 내 공공기관에서 보조금 지원을 한번도 받지 않은 단체 또는 개인
- 전문예술인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예술인

지원내용 및 지원분야

- 문화예술행사에 필요한 인건비, 임차비, 일반운영비, 홍보비, 제작비
- 지원분야 및 지원금: 40,000천원

(단위: 천원)

지원분야	내 용	지원규모	
문학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등	단체	5,000천원 이내
공연예술	음악, 전통·국악, 무용, 연극 등		
시각예술	순수미술, 서예, 사진, 영상, 조각, 공예 등	개인	4,000천원 이내
다원예술	기존 예술장르에 속하지 않는 복합예술장르		

※ 공연의 경우 단체만 가능(독주회, 솔로공연의 경우는 개인 가능)

필수제출서류

구분	지정서식(6종)	증빙자료(3종)
단체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주요참여인력명단 ④ 단체소개서 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⑥ 지원신청책임확인서	① 단체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② 고유번호증 또는 단체설립 증빙자료
개인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주요참여인력명단 ④ 개인프로필 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⑥ 지원신청책임확인서	①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03

예술활동지원

충청남도 내 공공지원 실적(보조금지원)이 없는 예술단체·예술인의 기획 및 창작활동 지원

03

예술활동지원

신청자격

- 공고일(2024. 2. 6.) 이전 아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단체 또는 전문예술인
 - ※ 대표자 주소지 아산시 필수(주민등록등본제출)
- 전문 예술인 30%이상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내용 및 지원분야

- 문화예술행사에 필요한 인건비, 임차비, 일반운영비, 홍보비, 제작비
- 지원분야 및 지원금: 30,000천원

(단위: 천원)

지원분야	내용	지원규모	
공연예술	음악, 전통·국악, 무용, 연극 등	단체	5,000천원 이내
시각예술	순수미술, 서예, 사진, 영상, 조각, 공예 등		

※ 공연의 경우 단체만 가능(독주회, 솔로공연의 경우는 개인 가능)
 ※ 인건비 편성 불가

필수제출서류

지정서식(6종)		증빙자료(3종)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① 단체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② 고유번호증 또는 단체설립 증빙자료 ③ 최근 3년간(2021~2023) 2회 이상 단독 주최/주관한 행사 증빙자료
③ 주요참여인력명단	④ 단체소개서	
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⑥ 지원신청책임확인서		



2024 아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

공통안내

1. 심사 방법 및 절차 안내
2. 교부신청 관련 사항
3. 사업진행
4. 정산서 작성 방법

1

공동안내

심사 방법 및 절차 안내



심사 절차

구분	내용	
일정	1차(행정심사)	• 2024. 3. 6.(수) ~ 3. 8.(금)
	2차(인터뷰심사)	• 2024. 3월 중
심사 대상		• 공모사업 지원신청 대상
심사 절차	1차(행정심사)	• 각 사업별 업무담당자 자체 심사 - 신청서류보완 및 자격 부합여부, 편성의 타당성 등
	2차(인터뷰심사)	• 전문가 심사(별도 위촉 심사위원 심사) - 1차 행정심사 선정 단체·예술인 기준 - 지원신청서 및 제출 자료 검토를 통한 지원액 결정
선정	교부 신청 안내 및 정산 교육	• 교부 신청 방법 및 정산 안내 교육(3~4월 중) - 공연, 전시, 문학 분야별 안내 교육 진행
	3차	• 지원 단체 지원금 교부(4월~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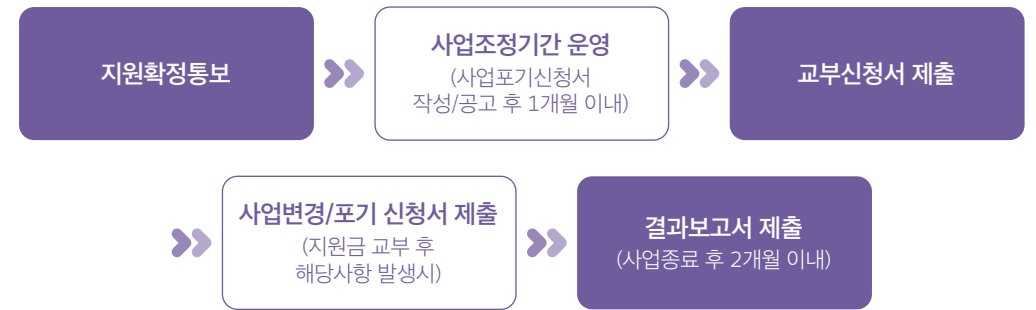
※ 상기 일정 및 인터뷰 심사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심사 세부기준

심사항목	심사기준
사업수행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을 위한 역량이 충분한가? • 기획, 감독, 출연자 등 참여인력의 역량이 높은가? • 지속적으로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발전가능성이 있는가?
완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유형별 사업 목적 및 대상에 적합한가? • 실행을 위한 준비는 철저한가? • 제작 일정 및 추진 계획이 현실적이며 구체적인가? •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였는가?
독창성·예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소재가 독창적인가? • 작품 기획에 있어 창의적, 예술적 수준이 높은가?

교부신청 및 절차 안내

• 교부신청절차



• 정산절차

구분	시기	행정절차	제출서류
선정확정 공고	3월	• 홈페이지 공고 - 선정단체·예술인, 정산교육설명회 일정 공지	-
교부신청서 제출	4월~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기존 통장 사용 시 잔액 0원으로 만든 후 사용 가능 •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으로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신청서 제출 당시와 사업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사전 승인 후 작성 및 제출 • 1, 2차 나눠 교부금 지급 - 1차: 4월(5~8월 행사진행) 2차: 8월(9월~11월 행사 진행) 	교부신청서 통장사본 체크카드사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부신청서 검토 및 지원금 교부	4월~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교부(5~8월) 행사 진행 단체(개인) • 7월(9월~11월) 행사 진행 단체(개인) 	-
사업 변경 신청	사업개시 ~종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일정, 예산, 참여 인력 등) 변경 시 사업담당자의 사전 승인 후 가능하며, 임의 변경 시 정산 평가감점 요인 •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포기 신청서 제출(사업계획서 일정 이후 사업을 포기 할 경우 이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사업변경신청서 or 사업포기신청서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 및 성과보고서 제출 • 사업 담당자 정산 서류 검토 및 확정 	정산서 행사완료보고서 행사결과물 통장사본
이자 및 잔액 반납	정산검토 결과 통보 후	• 정산검토결과 통보 후 이자 및 잔액 반납	입금확인증 0으로 처리된 통장사본

사업 운영관리

-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교부조건 미 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 및 모든 서류 제출일 준수 여부는 사업평가 결과와 함께 차기년도 지원신청시 사업 심의에 반영
- 지원금 교부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당해 사업이 종료되지 못한다면 전액 반환해야 하며, 보조금에 대한 이자 발생 시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함

사업 모니터링

- 사업계획 대비 실제 수행여부 확인과 운영 내용에 대한 점검 및 투명성, 책임성제고를 위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사업 평가에 반영
- 사업 일자 또는 장소 변경 시 최소 1개월 이전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
- 사업 변경 기간 내 담당자와 협의 없이 변경사항에 대한 공지가 없어 시행되지 못한 경우 모니터링 평가 점수 0점 처리
- 모니터링단의 경우 외부 전문 평가위원, 아산 시민 모니터링단 선정을 통해 예술성에 대한 평가를 지양하되, 사업 이행의 충실성을 중점에 두고 평가하고자 함
- 사업 현장 관람객 만족도 평가(설문조사) 수행 의무로 모니터링단 외 참여 관람객의 의견 수렴 반영

홍보물 및 저작물 제작 시 주최·주관 명칭표기 의무

- 사업 진행 시 홍보물 제작 필수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티켓, 도록, 책자 등 언론보도 및 사업 추진 시 제작되는 모든 제작물에 다음의 내용 필히 표기해야 함)
- 주최, 주관에는 보조사업자명이 표기되어야하며, 지원신청 시 신청자명과 동일해야함.
 - 타 단체 또는 개인이 주최·주관일 경우 차년도 지원사업 지원불가
- 후원명칭 표기 누락 시 사업평가에 불이익

주최: 아산시
주관: 아산문화재단, 단체명

(예시)

부제목: 2024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 선정사업
로 고: 아산시, 아산문화재단 로고삽입

포스터, 리플릿, 도록, 현수막 등

2 공동안내

교부신청 관련 사항

교부신청 전 준비사항

□ 지원금 관리용 별도 통장 신규 개설 또는 기존 계좌 사용

- 지원금을 관리할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통장의 잔액을 0으로 정리하여 사용 가능
 - 개설시 유의사항: 지원금은 별도의 지원금 계좌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1개 사업별로 각 별도계좌(통장)를 개설해야 함
 - 기존 통장 사용 시 : 잔액을 반드시 0으로 정리하여 지원금을 받아야 함
-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권장 은행: KEB하나은행
 - 하나은행 외 금융기관도 거래가능하나 보조금 집행 후 이자 및 잔액 발생 시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이체수수료는 예산 편성 가능)

□ 자부담 사업비 정산

- 자부담은 지원금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거나 지원금 통장에 자부담을 입금하여 사용 가능
 - * 단, 지원금 통장에 입금하여 발생한 이자는 사업이자와 함께 반납
- 자부담 지출 증빙은 통장 내역과 함께 지출 증빙자료(영수증)를 제출해야함

□ 지원사업 변경 시 유의사항

- 변경 내역의 사전 승인
 - 지원사업자는 변경사항(내용, 예산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얻은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함
 - 사업변경신청서는 공모지원사업 담당자에게 검토 후 전자우편을 통한 공문 접수
 - 변경 승인 공문을 받은 후 사업을 진행해야함
 - 예산 변경 시 목 변경 시에는 공문 승인을 받아야하며 세목간의 변경은 승인없이 진행가능함

□ 집행 및 정산 규정 숙지

-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의 의무
 - 지원사업자는 지원신청 시부터 지원금 교부 및 성과보고 시까지 본 지원사업의 수행절차를 재단이 정한 규정과 매뉴얼 등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원사업자에게 있음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작성

- 아산문화재단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고지·공고 → 공지사항
- 유의사항
 - 교부금은 정해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목적 외 사용금지)
 - 지원금 교부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
 - 사업 실행과 지원금 예산 집행은 당해연도 안에 마감해야 함
 - 예산 집행 등 지원사업의 지원금 세부 운영계획 수립 후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예산편성 방침

- 지원사업의 항목 변경
 - 예산 지침의 목 예산 내 세목 간 예산은 자율적 변경 집행 가능(사전 담당자에게 고지)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총 지원금의 70%이상 인건비 편성 불가
- 지원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금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 편성불가 항목

구분	내용
일상적 운영경비	• 상근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단체운영경비 (시설비, 수선비, 공과금, 사무용품 구입비, 전화요금 등)
자본적 경비	• 사업종료 후에도 자본적 성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경비 (노트북, 그래픽 카드, USB, 카메라 등) *사업 성과물 제출을 위한 USB 가능
인건비 집행경비	• 출연하지 않고 편성한 인건비 (강사료, 연출료, 감독비, 출연료, 보조인력비 등)
기타 불가항목	• 향서 기념품 구입, 행사답사비, 예비비, 잡비, 상금 및 심사위원 수당, 식비, 상업적 목적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 대표자 사례비

- 기획비: 지원금의 5% 이내 편성 가능
- 사례비: 지원금의 10%이내 편성 가능

단, 지원사업 내 본인의 역할(연출가, 안무가, 창작자, 기획자, 출연 등)에 대한 사례비

3

공동안내

사업진행

보조금 집행방법

□ 지원금 집행시 준수사항

-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
 - 자부담은 지원금 통장에 입금 후 함께 관리
 - 지원금 계좌는 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단체명(대표명)'이 기재되어야 함
 - 사업통장의 잔액은 지원금을 교부받기 전 0원 처리하여 교부신청을 해야 함
- 현금결제 불가 및 체크카드 사용
 - 모든 지원금 및 자부담은 현금결제가 불가함(현금 인출 사용 시 환수조치)
 - 반드시 지정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 카드의 사용제한
 - 지원사업비 카드사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는 지원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지원금 반납 등 교부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

*지원금 관리카드의 사용 업종 제한

룸살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헬스장,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당구장, 비디오방,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등

- 지원금 관리카드 이외의 카드 사용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적용
- 계좌이체
 - 인건비성 사례비 및 수당 지급시에는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영수증, 예술인고용 보험과 함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첨부
※ 입금확인증 : 무통장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출력
 - 물품구입 및 거래내역 지급 시에는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비교 견적서(100만원이상 지출 시)을 첨부함
- 지원금 교부 전 예산 집행 금지
 - 지원금 및 자부담은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함. 교부전 집행한 부분은 사후에 지원금으로 대체하여 보전할 수 없음(사후정산 금지)
- 정산범위
 - 모든 지원금(자부담 포함) 집행 및 거래내역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야 함
 - 단체의 경우, 지원금은 물론 자부담 금액을 포함한 총 사업비에 대한집행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주의사항
 - 지원금은 '직접경비'에만 지출되어야 하며, 지급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지원금 관리통장과 집행 증빙자료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 금지
 - 대표자 또는 주요참여인력이 대표자인 업체에 지급되는 제작비 및 임차비 등을 지급할 수 없음

□ 원천징수 이행 의무

- 원천징수 납부방법
 - 각종 사례비 등 인건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기재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원천세 납부기한을 놓쳐 발생하는 가산금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지원금으로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구분	내용	공제율
사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 사업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3.3%
기타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외의 소득 •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기타소득에는 상금, 저작권료, 일시적 인적용역소득 등이 있음 	8.8%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필수 (단, 가입기간과 과업 성격에 따라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음)
- 관련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등: 근로복지공단(1577-1000)
 - 보험료 고지 및 수납: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4

공동안내

정산서 작성 방법



🔍 지원금 정산서 작성

- 아산문화재단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고지·공고 → 공지사항
 - 사업의 계량적, 비계량적 성과를 기술하고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지원금을 포함한 사업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보고 작성 및 영수증, 증빙자료 제출
 - 정산보고시 사업비 지출항목별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고 산출근거(상세내역) 명시
 - 사업종료 후 성과보고와 함께 정산 증빙자료도 제출하여야 함
 - ※ 지원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선정단체 정산보고 의무화
- 정산범위 : 지원금 + 자부담(자부담 비용도 지원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증빙 및 정산)

🔍 지원금 집행증빙 영수증

- 지원금 집행에 대한 영수증 및 증빙서류
 - 지원금액에 상관없이 성과보고 시 지원금 집행 증빙자료의 원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
 - 지원금 집행에 따르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건별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지원사업 종료 후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해야 함
 - 지원금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재단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적법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됨

🔍 실적·정산 보고서 제출방법

□ 정산서 제출방법

- 제출방법: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아산문화재단 문화예술팀으로 제출
- 마감기한: 사업종료 2023. 11월까지 사업 종료되어야함.(예술인고용보험기간 고려해서 추진)

□ 정산절차



□ 결과물 제출

- 행사사진: 사업장소 전경, 부착물, 출연진, 공연 사진 등
- 영상 및 전시 자료: usb에 다운로드하여 제출 또는 담당자 이메일 발송
 - 전시의 경우 도록 제작을 위해 사용한 작품 사진 제출
- 책자, 도록, 리플렛 등: 인쇄물 1부
 - ※ 사업성과 증빙자료는 재단 사업의 홍보 및 아카이브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

□ 정산보고서 제출서류

- 정산·실적보고서: 배포된 양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
- 통장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전체 사본 제출
-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집행일자에 따라 지출결의서(번호) 작성 후 순서대로 첨부
- 지출결의서 순서
 - ① 지출결의서
 - ② 견적서(업체직인날인, 1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서)
 - ③ 영수증(원본과 복사본 함께 부착, 이면지 사용불가)
 - ④ 사진대지(물품, 홍보물 등 수량과 품목이 드러나도록 촬영)

□ 항목별 증빙서류

항목	집행방법	정산 증빙자료	
인건비 (사례비)	계좌이체	① 계약서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③ 출연증빙사진	④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확인증 ⑤ 원천징수영수증 ⑥ 예술인고용보험 납부내역서
보조인력		① 근로계약서 및 근무확인서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③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확인증	④ 원천징수영수증 (10만원 이하도 신고 필수)
제작비 일반운영비 임차비	카드집행	① 카드영수증(원본과 복사본 부착) *영수증에 세부 품목이 기재되어있어야함. 없을 경우 견적서필수	③ 증빙사진 (품목, 수량 파악 가능해야함) ④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서
	계좌이체	① 세금계산서 ② 견적서(1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서) ③ 증빙사진(품목, 수량 파악 가능해야함)	④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서 ⑤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확인증 ⑥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카드집행을 우선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가능

□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 지원금의 '집행 잔액' 및 지원금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구분하여 정산검토결과 통보를 받은 후 재단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 집행사실이 증빙되지 않은 지원금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여 정산검토 결과통보 후 반환조치
- 집행 잔액 및 이자 미반납 관련 조치사항
 - 집행 잔액 및 결산이자의 반환 지연 혹은 미반환에 대한 조치는 재단이 성과보고서 제출관련 조치사항에 준하여 처리하며, 별도의 추가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반환 절차
 - 지원사업 종료 후 통장사본을 정산서에 첨부하여 집행 잔액 및 이자 증빙
 - 정산검토결과 통보를 받은 후 확인된 집행잔액과 이자액을 구분하여 예금주명(단체명)으로 재단에 계좌입금
 - 지원금을 착오로 입·출금 했을 경우 사유(경위)서와 관련자료를 제출

□ 기타사항

- 재단은 지원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1, 4, 5번의 경우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상실한다.

1.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사업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였을 경우
4. 허위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정산, 평가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 정산을 진행한 경우
6. 지원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한 경우
7. 동일사업으로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8. 정산검사 결과 당해연도 지원금 집행 및 정산지침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어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IV

2024 아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

참고사항

1. 예산편성지침

1

참고사항

예산편성지침



☞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 원칙

구분	기본 원칙
사업 관련 직접경비만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편성불가항목>에 해당하는 항목은 지원금으로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포괄적 예산 편성 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 편성 불가 각 예산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용역·하도급 예산편성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사업은 선정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세금 납부, 정산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지원금 수령 후 집행과 정산 이행 의무 사례비, 원고료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관할 세무서 및 시에 신고·납부

☞ 필수 편성 예산 항목

구분	기본 원칙
복리후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필수 실시]
사업 성과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종료 후 성과물 제출을 위한 예산 편성 필수 (사진, 영상, 도록 등 제작 파일 제출) 사업이후 선정 예술인의 성과 자료 취합 후 책자 제작 예정 미제출시 사업 평가시 감점요인

☞ 편성 불가 항목

항목	세부사항
일상적 운영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근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단체운영경비(시설비, 수선비, 공과금, 사무용품구입비, 전화요금 등)
자본적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종료 후에도 자본적 성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경비 예) 노트북, 그래픽카드, USB, 카메라, 액자 등
인건비 집행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 대표자 또는 출연하지 않고 편성한 인건비(회의 거마비, 강사료, 연출료, 감독비, 출연료, 보조인력비 등)
기타 불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 기념품 구입, 행사 답사비(교통비, 입장료, 주차료 등) 예비비, 잡비 등 사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항목 상금 및 심사위원 수당, 식비, 다과·회의비 상업적 목적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예산 편성 항목

항목	세목	세부사항
인건비	개인(선정자) 본인사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의 20%이내 편성가능 ※ 단, 최대 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단체 대표자 사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지원금의 15%이내 편성 가능 - 기획료: 지원금 5%이내 편성가능 - 사례비: 지원금의 10%이내 편성가능 [대표자의 역할이 분명한 출연료, 기획료, 안무료, 연구비 등] ※ 단, 최대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각종사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료, 출연료, 연출료, 편곡료, 저작권비 등
제작비	홍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물 제작 디자인, 온·오프라인 홍보 등 - 현수막, X배너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등 • 도록, 서적 발간비 등
	발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 세트, 영상, 연출 소품, 표구 등 제작
	기타제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영상, 무대, 세트장 등 제작료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비 : 예술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 행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가능 • 은행이체수수료(단체 ↔ (재)아산문화재단) - 보조금 잔액 및 이자액 반납 시에만 가능 - 출연료, 홍보비, 임차비 등에 대한 이체수수료 지원 불가
	복리후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필수 실시] ※ 참고: 모의계산기(http://kawf.kr/emplns/emplnsShortCal.do)
임차비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소품 임차료(단기성) - 단체 소유의 기자재 및 소품 임차료 편성 불가 ○ 음향, 조명, 전기 등 시스템 및 버스, 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대관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부대시설 등 대관료 - 단체 소유 또는 단체 주요 참여 인력 시설에는 대관료 편성 불가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예산항목 등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은 사업담당자와의 확인 필요

2 0 2 4
○ 사 산 문 화 재 단
시 역 문 화 예 술
홀 닝 시 인 사 업
사 업 인 내

발행처 (재)아산문화재단

발행일 2024년 3월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로 79, 2층

전화 041.540.2428

홈페이지 <https://culture.asan.go.kr>

디자인·인쇄 디자인오늘(041.533.5530)